

인천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260714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전수려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6. 22.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47,312,535원 및 그 중 245,011,749원에 대하여 2022. 8. 17.부터,

나.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01,933, 916원 및 그 중

100,455,330원에 대하여 2022. 8. 17.부터, 각 2023. 3. 23.까지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22. 4. 14. 당진시 D 전 7879㎡ 중 7879분의 23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당진시 D 전 7879㎡ 중 7879분의 23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22. 4. 21. 접수 제14632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8. 4. 23.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142,500,000원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9. 4. 2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5. 22. 피고 회사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99,000,000원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20. 5. 2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2차 보증상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1, 2차 보증상 피고 회사가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2019. 4. 1.부터 연 8%)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가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면 최종보증료납부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1, 2차 보증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매년 원고에게 보증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1차 보증의 보증기한이 2022. 4. 21.까지, 2차 보증의 보증기한이  
2022. 5. 20.까지로 각 변경되었으나 2022. 1.경부터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중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22. 8. 17. 소외 은행에 피고 회사가 연체한 1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144,556,419원(원금142,500,000원 + 이자2,056,419원)을, 2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100,455,330원(원금99,000,000원 + 이자1,455,33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1, 2차 보증의 각 보증잔액금원에 대하여 보증료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위약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1,251,830원(원이하 버림)이 되고,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B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1,100,441원을 대지급금으로 지출하였다가 송달료  
환급금등으로 51,485원을 위 금원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여, 대지급금잔액은  
1,048,956원(1,100,441원 - 51,485원)이 남아 있다.

아 래

| 구 분  | 보증료만료일      | 대위변제일       | 미이행금원       | 위 약 금 계 산 내 역                                                                                         | 위약금       |
|------|-------------|-------------|-------------|-------------------------------------------------------------------------------------------------------|-----------|
| 1차보증 | 2022.04.21. | 2022.08.17. | 142,500,000 | $142,500,000 \times \frac{18}{1000} \times \frac{117}{365}$<br>(2022.04.22.부터 2022.08.16.까지<br>117일간) | 822,200   |
| 2차보증 | 2022.05.20. | 2022.08.17. | 99,000,000  | $99,000,000 \times \frac{18}{1000} \times \frac{88}{365}$<br>(2022.05.21.부터 2022.08.16.까지<br>88일간)    | 429,630   |
| 계    |             |             |             |                                                                                                       | 1,251,830 |

마. 피고 B는 유일한 재산인 당진시 D 전 7879㎡ 중 7879분의 231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외조카인 피고 C에게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22. 4. 21.자 접수 제14632호로  
2022. 4. 14.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당진시 D 전 7879㎡은 농지로 개별공시지가가 2021년경 ㎡당 91,700원, 2022년경 ㎡당 84,7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약 2,000만 원 정도가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다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1, 2차 보증에 따라 원고의 대위변제금, 위약금, 대지급금 잔액 합계 247,312,53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합계 245,011,74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2. 8. 17.부터, 피고 B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차 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 위약금, 대지급금 잔액 합계 101,993,91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00,455,33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2. 8. 17.부터 각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 3. 23.까지는 1, 2차 보증에서 정한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사해행위의 피보전권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1, 2차 보증으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2차 보증의 보증기한을 최종 2022. 5. 20.까지 연장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2022. 8. 17. 원고가 소외 은행에 위와 같이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피고 B의 무자력 여부 및 보전의 필요성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E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 별 재산이 없고 소극재산으로 대출금과 카드대금 등 254,777,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는 무자력임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다. 사해행위 여부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 등에게 있으며,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외조카인 피고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 B의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의 요청으로 2018. 2.경 3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겠다고 하여 기존의 대여금 3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피고 C으로서는 당시 피고 B나 피고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 B와 피고 C의 관계, 피고 B가 차용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전혀 차용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가 대물변제로 놓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C 주장과 같은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일부 증언이나 그 밖에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C의 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은영